문화예술기술투자조합의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 (황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300

발의연월일: 2024. 8. 28.

발 의 자:황 희·어기구·이용선

한민수 • 박 정 • 이기헌

이학영 · 문대림 · 이연희

이훈기 의원(10인)

제안이유

우리나라 문화예술 관련 콘텐츠 산업은 2020년대 들어 세계인의 높은 관심을 받으며 2022년 기준 세계 7위권의 규모로 성장하였으며, 약 12억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는 등 주요 수출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음.

그러나 세계적 규모의 온라인 콘텐츠 플랫폼이 지배적 위치를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처럼 지속될 경우,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은 단순히 생산 기지에 머물며 성장이 정체될 수 있다는 위기 의식 또한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이를 극복하고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효과적인 투자가 필요한 시점임.

이에 문화예술 분야에 특화된 투자펀드를 조성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문화예술기술투자공사를 설립하여 문화예술 관련 기업을 지원· 육성하도록 함으로써 문화예술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민경제에 기여 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이 법률에 따른 투자 대상인 문화예술기술기업의 범위를 정함(안 제3조).
- 나. 문화예술기술투자모대조합의 운용과 문화예술기술기업의 성장·발 전을 위한 투자 촉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예술기술투자공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 다. 문화예술기술투자공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주체로부터 출자를 받아 문화예술기술투자모태조합을 결성할 수 있음(안 제6 조).
- 라. 문화예술기술투자공사는 문화예술기술투자모태조합의 자산을 문화예술기술투자조합 등에 출자할 수 있음(안 제7조).
- 마. 문화예술기술투자조합의 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 바. 공모 방식의 문화예술기술투자조합과 외국인이 출자하는 문화예술 기술투자조합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안 제18조 및 제23조).
- 사.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문화예술기술기업의 창업 및 영업활동, 투자가치 등에 관한 정보를 문화예술기술투자조합이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

법률 제 호

문화예술기술투자조합의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예술기술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문화예술기술기업의 건전한 성장기반을 조성하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문화예술기술산업"이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의 문화산업,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2호의 문화산업 및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문화예술기술 관련 산업을 말한다.
- 2. "투자"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말한다.
 - 가.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 무담보 전환사채 또는 무담보 신주 인수권부 사채의 인수
 - 나. 유한회사 자본증가에 따른 출자의 인수
 - 다. 제3조에 따른 문화예술기술기업(이하 "문화예술기술기업"이라 한다)의 자산을 문화예술기술산업 및 관련 사업에 운용하고 그수익을 배분하기 위하여 문화예술기술기업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하는 행위

- 제3조(문화예술기술기업의 범위) 문화예술기술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1.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21호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
 -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상법」상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 가. 총매출액 중 문화예술기술산업 분야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 중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호출자제한기 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 3.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문화예술기술산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 제4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문화예술기술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성 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 여야 한다.

제2장 문화예술기술투자공사와 문화예술기술투자모태조합

제5조(문화예술기술투자공사의 설립 등) ① 국가는 제6조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기술투자모태조합의 운용과 문화예술기술기업의 성장·발 전을 위한 투자 촉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예술기술투자공사(이 하 "문화예술기술투자공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 ② 문화예술기술투자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 ③ 문화예술기술투자공사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④ 국가는 문화예술기술투자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자·출연 또는 지원할 수 있다.
- ⑤ 그 밖에 문화예술기술투자공사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문화예술기술투자모태조합의 결성) ① 문화예술기술투자공사는 다음 각 호의 자로부터 출자를 받아 문화예술기술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 또는 회사에 출자하는 문화예술기술투자 모태조합(이하 "문화예술기술투자모태조합"이라 한다)을 결성할 수 있다.
 - 1. 국가
 - 2. 지방자치단체
 - 3.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을 관리하는 자(이하 "기금관리주체"라 한다)
 - ② 기금관리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내의 자금을 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문화예술기술투자모태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 제7조(문화예술기술투자모태조합의 출자) ① 문화예술기술투자공사는

문화예술기술투자모태조합의 자산을 다음 각 호의 조합이나 회사에 출자할 수 있다.

- 1. 제10조에 따라 문화예술기술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결성된 조합
- 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 3.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5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 합
-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 5. 그 밖에 문화예술기술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결성된 조합 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조합
- ② 문화예술기술투자모태조합의 존속기간은 3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 ③ 그 밖에 문화예술기술투자모태조합의 관리·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문화예술기술투자공사의 업무 등) ① 문화예술기술투자공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문화예술기술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 또는 회사에 대한 출자
 - 2. 문화예술기술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의 결성

및 운영

- 3. 문화예술기술기업에 대한 투자
- 4. 문화예술기술기업에 대한 민간 및 해외투자자본의 유치 지원
- 5. 문화예술기술기업에 대한 경영 및 기술의 지도
- 6. 문화예술기술투자모태조합 자산의 관리 · 운용
-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사업
- 8. 그 밖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금관리주체로부터 문화예술 기술기업에 대한 투자와 관련하여 위탁받은 사업
- ② 문화예술기술투자공사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가, 국가가 설치한 기금 또는 국내외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 ③ 문화예술기술투자공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본금과 적립금 총액의 10배의 범위에서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④ 문화예술기술투자공사의 정관을 변경할 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⑤ 문화예술기술투자공사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9조(결산 보고) 문화예술기술투자공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결산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문화예술기술투자조합

- 제10조(문화예술기술투자조합의 결성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문화예술기술투자모태조합으로부터 출자를 받아문화예술기술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조합(이하 "문화예술기술투자조합"이라 한다)을 결성할 수 있다.
 -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벤처투자회 사(이하"벤처투자회사"라 한다)
 - 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3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 자(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라 한다)
 - 3. 문화예술기술투자공사
 - 4.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상법」상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
 - 가. 출자금 총액이 조합 결성 금액의 100분의 1 이상일 것
 -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전문인력을 보유할 것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② 문화예술기술투자조합은 그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1인이상의 조합원(이하 "업무집행조합원"이라 한다)과 출자액을 한도로하여 유한책임을 지는 조합원(이하 "유한책임조합원"이라 한다)으로구성한다. 이 경우 업무집행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되, 그 중 1인은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

-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투자매매 업자, 투자중개업자 또는 집합투자업자
- 3. 「보험업법」 제2조의 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
- 4. 「은행법」 제2조의 은행
- ③ 문화예술기술투자조합에 손실이 있을 경우 업무집행조합원과 문화예술기술투자공사는 각각 출자한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그 손실금을 부담할 수 있다. 다만, 잔여손실금이 있는 때에는 각 조합원이 그 출자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그 손실금을 부담한다.
- ④ 제18조에 따른 공모문화예술기술투자조합을 결성하는 경우 제2 항 전단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업무집행조합원을 1인으로 하고, 제3 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⑤ 문화예술기술투자조합의 결성 및 그 밖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기금의 투자 등) ① 기금관리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내의 자금을 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문화예술기술기업에 투자하거나 문화예술기술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 또는회사에 출자할 수 있다.
 - ② 기금관리주체가 기금운용계획의 범위에서 행하는 문화예술기술 기업에 대한 투자나 제1항에 따른 조합에 대한 출자에 관하여는 관 계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승인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 ③ 보험회사는 「보험업법」 제106조, 제108조 및 제109조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범위에서 문화예술기술기업에 투자하거나 문화예술기술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 ④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법」 제159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한 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예술기술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 또는 회사에 출자할 수 있다.
- 제12조(문화예술기술투자조합의 등록 등) ① 문화예술기술투자조합을 결성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1. 출자금 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다만, 출자금은 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나누어 출자할 수 있다.
 - 2. 존속기간이 3년 이상일 것
 - 3. 업무집행조합원의 임원 및 투자심사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인력이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일 것
 - 가.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 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 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마.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하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바. 제28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제12조제1항제3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문화예술기술투자조합의 취소 당시 임직원이었던 자(그 등록취소 사유의 발생에 관하여 직접 책임이 있거나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만 해당한다)로서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4. 그 밖에 문화예술기술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지분, 조합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 ② 그 밖에 등록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제13조(업무의 집행 등) ① 문화예술기술투자조합의 업무는 업무집행조합원이 집행한다.
 - ② 업무집행조합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출자자의 이익을 위하여 문화예술기술투자조합의 자산을 관리하여야 한다.
 - ③ 문화예술기술투자조합은 등록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출자금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상의 금액을 문화예술기술기업에 대한 투자사업에 사용하여야 한

- 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문화예술기술기업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금액을 우선적으로 투자하여야 한다.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투자회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투자의무 이행에 대한 유예기간을 줄 수 있다.
- ⑤ 업무집행조합원은 문화예술기술투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자기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문화예술기술투자조합의 재산을 사용하는 행위
- 2. 문화예술기술투자조합 명의로 자금을 차입하는 행위
- 3. 문화예술기술투자조합의 재산으로 지급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
- 4. 그 밖에 설립목적을 해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⑥ 문화예술기술투자조합은 업무집행조합원에게 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수익에 따른 성과보수를 지급할 수 있으며, 성과보수 지급을 위한 투자수익의 산정 방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⑦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기술투자조합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문화예술기술투자조합의 표준규약을 정할 수 있다.
- 제14조(재산의 관리와 운용) ① 업무집행조합원은 문화예술기술투자조

합 재산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 1. 문화예술기술투자조합 재산의 보관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에 위탁할 것
- 2. 신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총회의 승인을 받을 것
- ② 제1항에 따른 수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 1. 문화예술기술투자조합 재산의 보관 및 관리
- 2. 업무집행조합원의 문화예술기술투자조합 재산 운용 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 제15조(결산 보고) 업무집행조합원은 매년 문화예술기술투자조합의 회계연도가 끝난 뒤 3개월 이내에 그 결산서에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6조(업무집행조합원의 탈퇴) 업무집행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문화예술기술투자조합을 탈퇴할 수 없다.
 - 1. 벤처투자회사나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등록이 취소되었거나 말소 된 경우
 - 2. 업무집행조합원이 파산한 경우
 - 3.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 제17조(해산) ① 문화예술기술투자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산한다.
 - 1. 존속기간의 만료

- 2. 유한책임조합원 전원의 탈퇴
- 3.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집행조합원 전원 의 탈퇴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② 문화예술기술투자조합에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유한책임조합원 전원의 동의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10조제1항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집행조합원을 가입하게 하여 문화예술기술투자조합을 계속할 수 있다.
- ③ 문화예술기술투자조합이 해산하면 업무집행조합원이 청산인이된다. 다만, 조합의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집행조합원 외의 자를 청산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 ④ 문화예술기술투자조합의 해산 당시의 출자금액을 초과하는 채무가 있으면 업무집행조합원이 그 채무를 변제하여야 한다.
- 제18조(공모문화예술기술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① 공모문화예술기술투자조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문화예술기술투자조합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부터 제43조까지, 제48조,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제56조, 제58조, 제60조부터 제63조까지, 제63조의2, 제64조·제65조, 제80조부터 제83조까지, 제

85조제2호·제3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 제86조부터 제95조까지, 제181조·제182조·제182조의2·제183조, 제184조제1항·제2항·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185조부터 제187조까지, 제218조부터 제223조까지, 제229조부터 제234조까지, 제235조부터 제242조까지, 제244조부터 제249조까지, 제249조의2부터 제249조의9까지 및 제250조부터 제253조까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6조, 제22조제6항,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제44조, 제45조, 제47조부터 제66조까지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은 제외한다)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모문화예술기술투자조합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 ③ 금융위원회는 공모문화예술기술투자조합의 조합원을 보호하거나 그 밖에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면 공모문화예술기술투자조합 에 대하여 업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명할 수 있고, 금융 감독원장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④ 금융위원회는 공모문화예술기술투자조합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으로 한정한다)을 위반한 경우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부터 제22조(제6항은 제외한다)까지 및 같은 법 제23조

를 위반한 경우에는 이 법 제2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 등을 하도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고, 문 화체육관광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조치내역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 야 한다.

- 제19조(청산결과 보고와 등록의 말소) ① 제17조제3항에 따른 청산인 이 청산사무를 끝마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 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문화예술기술투자조합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 제20조(조합 재산의 보호) 문화예술기술투자조합 조합원의 채권자가 조합원에 대하여 채권을 행사할 때에는 「민법」 제704조 및 제712 조에도 불구하고 그 조합원이 문화예술기술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의 범위에서 이를 행사할 수 있다.
- 제21조(조합의 공시) 업무집행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무소에 갖추어 두고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1. 해당 문화예술기술투자조합의 규약
 - 2. 매 회계연도의 결산서
 - 3. 그 밖에 조합의 운영에 관한 서류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것
- 제22조(준용규정) 문화예술기술투자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 외에는 「상법」 중 합자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같은 법 제86조의4 및 제86조의9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 제23조(외국인의 출자에 대한 특례 등)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 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이 행하는 문화예술기술투자조합에 대한 출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로 본다.
 - ② 외국인(대한민국에 6개월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개인을 말한다)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6항에 따른 외국법인등에 의한 문화예술기술기업의 주식취득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6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등에 의한 문화예술기술기업의 주식취득에 대하여는 해당 문화예술기술기업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제한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 제24조(조세에 대한 특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기술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그 밖의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법인세·취득세·재산세 및 등록 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 제25조(문화예술기술기업에 대한 정보 제공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 관은 문화예술기술기업의 창업 및 영업활동과 관련된 자금·인력·

판로 및 입지 등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고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정보를 문화예술기술투자공사, 문화예술기술투자조합 등에 제공할 수 있다.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의 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한다.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기술기업에 대한 문화예술기술투자조합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예술기술기업의 투자가치에 관한 정보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제26조(보고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문화예술기술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또는 문화예술기술투자 공사에게 업무상황 등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사무소와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하는 경우에는 검사 7일 전에 검사의일시, 목적, 대상 등을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실시할 필요가 있거나 사전에 통지를 하는 경우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제27조(행정처분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기술투자조합이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정을 명하거나 이 법에 따른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 1. 제12조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 2. 벤처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 된 경우
 - 3. 제13조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출자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금액을 문화예술기술기업에 대 한 투자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4. 제13조제5항에 따른 업무집행조합원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
 - 5. 제19조제1항에 따라 청산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 6. 제19조제2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되거나 제28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 제28조(등록의 취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기술투자조합이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 2. 제12조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다만, 업무집 행조합원의 임원 또는 투자심사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인력이 같은

항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임 원 또는 투자심사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인력을 바꾸어 임명하면 그 러하지 아니하다.

- 3. 제13조제3항에 따른 투자이행의무를 위반한 경우
- 4. 제13조제5항에 따른 금지사항을 위반한 경우
- 5. 제1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 제2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문화예술 관련 기관과 단체에 위임·위탁할 수 있다.
- 제3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29조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31조(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문화예술기술투자조합이 아닌 자는 문화예술기술투자조합의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5장 벌칙

제32조(벌칙) 제13조제5항에 따른 금지행위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15조에 따른 결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결산서를 제출한 자
 - 2. 제27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 3. 제31조를 위반하여 문화예술기술투자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 을 사용한 자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 육관광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31조 및 제33조제1항제3호는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문화예술기술투자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3조(문화예술기술투자조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문화예술기술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등록한 조합에 대하여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적용한다.